•••

# 의료인 면허취소 징벌적 확대저지 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강탈법) 관련 대회원 홍보자료





## 1.주요 경과

- 21.02.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 의료인 결격사유 대상 범죄 확대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신청 금지기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강탈법) 상정 및 의결
- 21.02.19.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의결
- 21.0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 예정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의 종류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 취소
  -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종류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 강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
  -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 금지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강탈법) 문제점

- ①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규제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본 조문의 합헌성을 결정한 선례에서 보듯이 직무의 공공성 및 직무범위를 의사와 달리 판단하여,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이는 의료인 면허에 대해 과도한 징벌적 규제입니다.**
- ②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p.162-175.)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

- ③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 의료인이라는 직종을 이유로 선고된 형이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죗값을 치른 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 예를 들면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고의적이지 않고(즉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만약 면허강탈법이 개정되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과실임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총 4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④ 평등원칙 위배 및 타 전문직에 비해 과도한 규제입니다.
- 의료인에 한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거나, 기존에 정하고 있는 **면허재교부 제한 기한이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재교부 제한 기한을 늘리는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 명목상으로는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과의 균형을 입법 목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타 전문직에는 규율하지 않는 사항을 의료인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타 전문직에 존재하는 내용조차도 그 기간에 있어서는 의료인에게 더 과도하게 긴 기간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 의료인에 한하여 기존의 면허재교부 제한기간과는 별도로 결격사유 기간을 추가로 규정하여 경미한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면허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아 3년이 지나야만 면허재교부가 가능합니다.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강탈법)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 대한의사협회는 살인, 강도, 성폭행(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면허 처분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허강탈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사의 직업적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맞지 않으며, 개정안이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의료인들의 저항을 막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중범죄 이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해석처럼 면허 처분 대상을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면허강탈법 개정시 향후 의사면허 취소 적용 사례 예시

연번	주요 적용 사례	해당법령 및 처벌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최대한의 안전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	특정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	응급실에서 환자가 진료 지연 등의 사유로 의료진을 폭행하고 이를 방 어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경우	형법 상해한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업주가 근로자와 등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b>징역 1년</b>
4	이익이나 재물을 취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의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
5	위장전입으로 주택분양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b>
6	의원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로 소방서가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한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 7. 13. 시행 예정)에 따라 감치명령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재직 중 직원들의 개인정보업무를 취급하였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직원들의 성명, 연령,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직원명부 파일을 본인의 이메일 편지함에 옮겨 보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